



2014. 3. 25. (화)

2014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및 운영계획



"평화의 법정, 감동의 서비스"

수 원 지 방 법 원

2014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및 운영계획

1. 목적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대학생 포함)이 재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도움을 주고, 재판진행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사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계획

- 모집인원 : 약 3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4년 4월 1일 (화) ~ 2014년 4월 11일 (금)
- 모집대상 (별지 1, 2)
 - 제4(수원시),5기(화성시) 시민생활법률학교 수료자 : 3명
 - 일반 시민(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모집) : 2명
 -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학교로부터 추천 : 5명
 -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찰대학교, 단국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학생 중 각 3명을 학교로부터 추천 : 18명
 -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 단체 회원 추천 : 2명
- 활동기간 : 2014년 4월 ~ 11월
- 위촉식 및 간담회 : 2014년 4월 중(선정 후 추후통지)

3. 시민사법모니터링 운영 계획

- 일반 시민, 시민생활법률학교 수료자, 대학교 학생, 사회단체 회원 중 선정된 사법모니터를 4개조로 나누어 활동 (1조 : 4월~5월, 2조 : 6월~7월, 3조 : 8월~9월, 4조 : 10월 ~ 11월)
 - ▷ 위촉식 후 간담회에서 조 편성 및 모니터링 할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선정 예정
- 활동 시작 전 활동 요령 안내를 위한 간담회(2014년 4월 중)를, 활동 종료 후에는 모니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각 실시 예정(2014년 12월 중)
- 시민사법모니터에게는 법원 기념품 수여, 법원견학, 그림자 배심원 참가신청 시 우선 선정, 시민생활법률학교 대상 기관 추천 시 적극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시민사법모니터는 2개월 단위로 각 재판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2회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10일 이내에 수원지법 총무과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별지 3. 참조)를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 본인은 위 각 호 중 하나에라도 위반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스스로 모니터에서 물러나겠으며 모니터에서 해촉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하고, 귀 법원의 자원봉사로서 시민사법모니터를 지원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시민사법모니터링 담당자(☎ 031-210-1129)

2014.

지원자 _____(서명,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2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검토하신 뒤 지원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선정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락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담당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사진, e-mail 주소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진행기간

(2013. 4. 1. ~ 2014. 12. 31.)
 4. 정보주체의 수집 거부 권리 안내 :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진행 공지 등 주요사항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

지원자 _____(서명, 인)

본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를 지원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2 : 시민사법모니터 추천서(각 학교 및 기관용)]

시민사법모니터 추천서

성명 및 성별	(남, 여)
나이	
소속(단체/학교·과)	
주소	
연락처	
E-mail	
추천사유 및 경력사항	
1. 추천사유(간단히 기재요망)	
2. 경력사항(예) 법원견학, 봉사활동, 그림자배심원 활동 등)	

위의 사람을 2014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추천합니다.

2014년 6월 3일

추천인 (인/서명)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시민사법모니터링 담당자(☎ 031-210-1129)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3 : 시민사법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시민사법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단체/학교·과)	
연락처	

총평

자유로운 의사 개진(모니터링한 재판부 전체의 재판진행과 관련된 느낌이나 소회를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인 (인/서명)

수원지방법원 귀중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 : 000
대상재판부 : 000

법정모니터링 결과지

우리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아래의 설문에 답하여 보내 주시면, 소송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재판진행과 관련된 느낌이나 소회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 재판부는 당사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듣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4. 재판장이 판결선고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5.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편찬

을 주는 느낌을 받았는가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다소 화를 내거나 핀잔주는 느낌을 받았다. ③ 화를 내거나 핀잔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6.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거부된 적이 있는가요.

- ① 있다. ② 없다.

6-1. (위 6.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당시 재판부가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술기회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가요.

- ① 설명하였다. ②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여 재판부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8. 재판이 고지된 예정시작시간보다 지연되었는가요.

- ① 지연되지 않았다(10분 이내) ② 10분 ~ 20분 지연, ③ 20분 ~ 30분 지연, ④ 30분 이상 지연

8-1. (위 8.항에서 ② ~ ④번을 선택한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시작시간이 지연된 사정에 관한 양해를 구하였는가요.

- ①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②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9. 재판장이 주장을 정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여 들어주면서 진행과정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재판을 진행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0.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등이 증거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는가요.

- ① 거부된 적 있다. ② 거부된 적 없다.

10-1. (위 11.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당시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가요.

- ① 설명하였다. ②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11. 증인이 법정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